

KUSF 클럽챔피언십 2023 : 탁구 챌린지 대회 규정

가. 전체 대회규정

1. 총칙

제1조 (명칭)

- 본 대회는 “KUSF 클럽챔피언십 2023 : 탁구 챌린지” 라 칭한다.

제2조 (주최, 주관)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KUSF)가 주최,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재정 후원한다.

제3조 (기간 및 일정)

- 기간 및 일정은 KUSF가 결정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대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제4조 (대회의 취소 또는 연기)

- 국가재난사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여 대회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회개최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제5조 (경기규정)

- 국제탁구연맹(ITTF) 경기규정을 기반으로 하며, KUSF가 정해놓은 로컬룰(경기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6조 (참가자격)

- 본 대회의 참가 선수자격은 대회 기간 내 재학생 또는 휴학생만 참가할 수 있다.
 - * 단, 대회 기간이 방학일 경우 직전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 * 졸업유예, 수료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은 선수로서 참가할 수 없다.
- 선수 출신의 참가를 제한한다. 단, 초등부 선수 출신만 출전할 수 있다.
- 선수 출신 확인은 종목별 협회 또는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 외국인의 경우 학부생 또는 교환학생만이 참가 가능하며 대학 어학당의 외국인은 출전을 제한한다.
-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최 측 판단에 따라 진행한다.
- 남자부에 여자 선수(1명)가 뛰는 것은 허용하나 별도 핸디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 (저작권 및 초상권)

- 본 대회와 관련된 모든 저작권 및 초상권은 주최 측에 귀속되며,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회와 관련된 사진 및 이미지 사용에 대한 권리
 2. 대회 기간 선수들의 초상권
 3. 선수 경기 화면 및 향후 재가공되는 모든 영상 관련 콘텐츠에 대한 초상권

제8조 (참가신청)

- 참가 팀은 최소 4명 ~ 최대 6명(예비 선수 2명 포함)으로 단일 대학 소속으로 구성해야 한다.
- 별도 부수 제한은 없으며, 자유롭게 선수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참가신청은 팀 대표자가 마감일 내에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모집 요강에 명시된 이메일로 접수하여야 한다.
 - 모든 참가 선수는 KUSF 홈페이지 내 클럽챔피언십 멤버십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참가신청서에 아이디를 작성해야 하며, 미가입 또는 허위 제출 시 해당 선수는 대회 출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참가신청 선착순 확정은 참가비 입금 순으로 진행된다.
 - * 참가팀별 3만원 대표자 명으로 사전 공지된 계좌로 입금(입금자명 예시: 탁구OOO)
- 참가 팀 수가 모집 팀 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참가 팀을 선정한다.
 - ① 주최 측 판단에 따라 운영 가능 범위 내 참가팀 확정
 - ② ①번 기준 적용 후, 동일 대학 1개 팀 기준 적용
 - * 동일 대학 간 선착순 기준 적용
 - ③ ②번 해당 사항 없는 경우, 선착순으로 참가팀 확정
- 참가선수명단 수정은 KUSF가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어떠한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2. 대회운영

제9조 (경기방식)

- 본 “대회”는 참가신청을 통한 참가 팀을 모집하여, 확정된 팀 수에 맞춰 조별예선 후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 조별예선 및 토너먼트 운영 방식은 참가팀 확정 후 대표자 회의에서 참가팀에게 공지한다.

제10조 (신분확인)

- 신분확인은 경기 당일 경기장에서 모든 선수가 직접 본인 서류(신분증, 재학증명서)를 지참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 * 경기장에 입장하는 선수, 코치, 감독 등 모든 관계자는 신분확인을 받고 입장해야 한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하며, 실물 신분증만 인정한다. 또한, 학생증 및 기타(테블릿 PC, 스마트폰)로 대체할 수 없다.
-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24 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의 이용을 통한 신원확인 가능하다. (단, 모바일 신분증 또는 증명서상에 사진이 있어야 함)
- 재학증명서 및 재학증명은 인터넷 또는 기타(테블릿 PC, 스마트폰)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재학증명서는 참가하는 대회 해당 연도 내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한다.
- 출전선수는 주최 측에서 신분확인이 필요할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불응할 시 경기에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출전선수단 준수사항

제11조 (참가 선수 복장)

- 경기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반바지, 반팔 상의, 운동화를 착용해야 하며 흰색 상의와 모자는 착용할 수 없다.
- 참가하는 팀의 유니폼이 상업성을 나타내거나 지나친 광고 목적을 가진 유니폼일 경우, 주최 측에서 판단하여 팀 조끼 착용 또는 상표 가리기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팀은 무조건 수용해야 하며, 수용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유니폼 규정은 종목별 경기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12조 (장비)

- 국제탁구연맹(ITTF) 공인한 모든 러버만 허용한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는 주최측 판단에 따라 진행한다.

제13조 (이의제기)

- 경기에 대한 이의제기는 경기가 종료된 이후 1시간 내 주최 측에 소청하여야 한다. 경기 및 선수자격 관련 이의제기에 대한 증빙자료와 문서는 이의제기한 팀에서 전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최 측에서 판단하여 합당한 이의제기의 경우, 추가 조사를 하고 각 팀은 경기결과 및 선수 자격에 대한 주최 측 결정을 수용하여야 한다.

4. 대회 벌칙규정

제14조 (경기장 질서 문란)

- 경기장 내에서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물리적 폭력 행위 :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법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KUSF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 출전권을 영구 박탈한다.

* 폭력사태 발생 시 즉각 경찰 신고 후 해당 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인계한다. 당사자 과실이 인정되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2) 폭언, 모욕 등 언어적 폭력 행위 : KUSF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 참가 자격을 해당연도부터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3) 과도한 판정 항의 : KUSF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 참가 자격을 해당연도부터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경기에 불응할 경우 잔여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몰수패로 인정한다.

4) 시설 및 기물 파괴 : KUSF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 참가 자격을 해당연도부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 모든 벌칙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적용 범위는 선수뿐만 아니라 경기장 내에 있는 심판, 경기원 등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 대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서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15조 (부정선수)

- 선수 명단에 등록된 선수라도 해당 선수가 참가자격에 어긋나는 선수라면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부정선수와 부정선수가 속한 팀은 잔여 경기에 더 출전할 수 없다. (단, 고의적이 아님을 제소하여 주최 측에서 이에 대한 사항을 인정하면, 부정선수가 출전한 경기만 몰수패가 적용되고 이후의 잔여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 주최 측에서는 부정선수에게 2년 참가 자격과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팀은 최대 2년간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몰수패)

- 몰수패, 기권패가 있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조별예선 최하위로 기록된다. 단, 사유가 천재지변, 심각한 부상 등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주최 측에서 판단하여 최하위 벌칙은 면할 수 있다.
- 모든 종목은 경기 시작 전 경기규정에 명시된 최소 인원이 경기장에 있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몰수패로 인정한다.
- 몰수 경기 스코어는 종목별 경기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사전 몰수패 또는 기권으로 인하여 경기를 취소할 경우, 주최 측에서 그 사유와 상황을 판단하여 해당 팀에게 최대 1년간 KUSF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참가비에 대한 환불은 없다.

5. 대회 기타규정

제17조 (대회공지)

-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공지사항 및 경기일정 변경의 사항 등은 KUSF SNS 및 카카오톡 공지방 등을 통해 공지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해당 팀의 불이익에 대하여 주최 측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8조 (이외의 제반 사항)

- 본 대회규정에 제반 되지 않은 내용 발생 시 주최 측의 판단 또는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나. 탁구 경기규정

1. 국제탁구연맹(ITTF)에서 공인하는 리버만 허용한다.
2. 시합구는 ‘XIOM엑시움 BRAVO(브라보)’ 으로 진행한다.
3. 모든 경기는 단체전으로 진행한다. 예선은 총 3라운드, 토너먼트는 총 5라운드로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예선리그는 3라운드 2선승제, 토너먼트는 5라운드 3선승제로 진행된다. 단, 대회 상황을 고려해 5라운드 적용 시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대표자회의에서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구분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예선리그	단식	복식	단식 (에이스결정전)		
토너먼트	단식	복식	단식	복식	단식 (에이스결정전)

4. 매 라운드별 단식, 복식은 3세트까지 진행되며, 이 중 2세트를 먼저 이기는 팀이 승리한다.
5. 예선 리그에는 라운드당 1번(선수 또는 벤치), 토너먼트에는 라운드당 2번(선수 1회, 벤치 1회)의 타임아웃이 있으며, 타임아웃은 1분이 주어진다.
6. 라운드가 종료되고 다음 라운드까지는 2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7. 경기 시작 전, 양 팀은 안내데스크에서 받은 경기 라운드별 선수 명단을 작성하여 심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가 종료 될 때까지, 제출된 선수 명단은 변경이 불가하다.
8. 예선 리그에서는 라운드 스코어가 2-0일 경우, 승자가 승점 3점을 가져가며, 라운드 스코어가 2-1일 경우, 승자가 승점 2점, 패자가 승점 1점을 가져간다.
9. 예선 리그 순위는 승점→ 세트 득실→세트 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전체 세트 득점까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다.
10. 경기촉진제 규정을 적용하여 대회를 진행한다.
11. 경기마다 모든 선수는 2라운드로 출전을 제한하며, 예선 3라운드와 토너먼트 5라운드는 에이스 결정전으로 출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명의 선수가 2라운드 이상 출전할 수 없으며, 에이스 결정전은 2라운드 이상 출전한 선수라도 출전할 수 있다.)
12. 각 팀의 유니폼은 상의 반팔과 하의 반바지로 구성되어야 하며, 디자인과 색상은 동일하지 않아도 되나, 흰색 색상의 상의 유니폼은 금지한다.
13. 경기장에는 운동화 또는 실내화만 착용해야 하며, 구두나 실외화(슬리퍼)는 입장을 제한한다.
14. 대진표상에 정해진 경기개시 시간보다 10분이 지연될 때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은 팀은 기권으로 간주하여 몰수패 처리한다. (경기개시의 최소 인원은 4인이다.)
14. 출전 참가 선수의 부정 여부 등 문제점을 소정의 열람기간에 사전 확인 혹은 대회현장 및 대회기간 중 제보하여 부정선수(대리출전자, 졸업이 지난 사람, 중학교 이상 선수 경력, 이중 참가 신청자 등)로 판명이 될 경우, 그 팀은 실격 처리하며, 대회 벌칙규정에 따라 처리한다.